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9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 강선우 · 임오경 · 서미화

전현희 • 위성곤 • 김동아

김 윤 · 김윤덕 · 채현일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아동의 생명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이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도 높은수준임. 또한, 매년 발표되는 우리나라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사망원 인을 분석·검토하여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적 조치를 마 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 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아동사망 검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아동사망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4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국내 발생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해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 치하고.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

- 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 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하고,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시스템 및 통계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의 검토・예방에 관한 연구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아동 사망검토・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8조).
- 사. 지역의 개별 아동사망 사건 원인 등 검토,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위해 시·도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검토위원회는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결과와 아동사망의 원인 분석 등이 포함된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국가아동사망검토튀원회에 제출하며, 그 밖에 지역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사망의 검토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2. "아동사망"이란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을 말한다.
 - 3. "예기치 않은 사망"이란 이 법에 따른 검토 전에 발생한 아동 사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과거 병력 또는 징후나 증상 없이 발생한 사망
 - 나. 외상이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
 - 다.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따른 사망
 - 라. 기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 4. "예방 가능한 사망"이란 합리적인 의학적·사회적·법적·심리적 또는 교육적 개입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을 말한다.

- 5. "검토"란 아동사망(개별 아동사망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정보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6. "아동사망 관련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자료 또는 기록을 말한다.
 -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 나.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 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 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 라.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 · 수색 · 검증 영장
 - 마.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 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른 수사기록
 - 사.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 조서
 - 아. 「소년법」 제30조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 리 기록과 관련 증거물
 - 자.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된 소년에 관한 보고 서나 의견서 및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 보고서
 - 차.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정보
 - 카. 제17조에 따라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
 - 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 된 정보

-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에 따른 정보, 자료 또는 기록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자료 또는 기록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아동사망의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 예방 및 사망아동의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아동사망 예 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 2.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3.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4.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 5. 아동사망의 검토 및 예방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 6.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아동 및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 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 를 매년 제8조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이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 제8조(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의 모든 사망사건을 검토하여 아동사망의 원인과 발생률에 대한 국민의 이 해와 관심을 높이고,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그 대책이 법령·제도·정책에 반영 및 이행되는 것을 점검하기 위 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법의학 전공자 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아동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6.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은 그 위원의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⑥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⑦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대통령, 국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이하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별 · 원인별 및 기타 분류에 따른 아동사망 현황 통계
 - 2.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 대한 종 합적 검토 및 분석
 - 3. 예방 가능한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

- 4. 예방 가능한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평가 결과
- ④ 위원회는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 따라 아동사망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대통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사항이 법령·제도·정책에 반영 및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이행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통 령, 국회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반영 및 이행 여부 점검·평가, 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여부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위원회는 아동사망 사건 중 국가 또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선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사건 검토팀을 구성하여 중대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검토를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홍보 등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

를 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위원회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위원과 보조인력 등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임면한다.
 -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

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7조(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는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를 입력·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하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 ③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는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 「통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
 -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 보시스템
 - ④ 위원회는 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따라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① 그 밖에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① 위원회는 아동사망의 검토·예방에 관한 연구 및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이하"아동사망검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아동사망검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및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 2. 예방 중심의 아동사망검토 프로세스 개발 구현 및 유지
 - 3. 아동사망검토 방법·절차의 연구·개발
 - 4.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 5.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위원회 간의 네트워크 지원
- 6.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아동사망검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 제19조(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이하 "지역검토위원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지역의 개별 아동사망사건의 사망원인 등 검토
 - 2. 지역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의 수집 · 분석 및 통계자료 작성
 - 3.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의 작성
 - 4. 사망한 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체계와 의 연계
 - ② 지역검토위원회의 검토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 1. 질병이환 또는 외인(外因)으로 인한 사망

- 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임상적 특징이 발견된 사망으로서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는 사망
- ③ 제1항제3호의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결과
- 2. 아동사망이 예기치 않은 사망이었는지 여부
- 3. 아동사망을 야기한 위험요인
- 4. 아동사망이 예방 가능한 사망인 경우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효과 적 방안
- 5.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 · 제도 개선 등 권고사항
- 6. 유가족 상담 및 복지지원 연계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
- ④ 지역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검토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지역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역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검토위원회에는 아동사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지역검토위원(이하 "지역검토위원"이라 한다) 및 1인의 지역검토위원장을 각각 둔다.
 - ② 지역검토위원은 지역 아동보호 담당자, 검사·변호사·검시조사 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수사경과를 이수한 자에 한한다)로 재직하거

나 재직하였던 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교육 전문가, 아동보호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예방 전문가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의 위촉을 거쳐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검토위원장은 지역검토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지역검토위원회는 검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상담전문가 및 보조인력 등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지역검토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사무국 종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지역검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는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검토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검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지역검토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사건의 검토대상자(아동사망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지역검토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3. 지역검토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관한 진료에 관여하였던 경우

- 4. 지역검토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 ② 검토대상자는 지역검토위원의 검토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역검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지역검토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검토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역검토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지역검토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지역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22조(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방법·절차)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에서 개별 아동사망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암호화된 아동의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의 지역검토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지역검토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역검토위원회에 알리고, 알린 날부터 4주 이내에 검토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지역검토위원장은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검토에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지역검토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지역검토위원은 사망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망 전후에 각종 사회보장서비스가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지역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검토센터가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한 검토 방법·절차에 따라 개별 아동사망사건을 검토하고 그 검토 데이터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아동사망정보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⑥ 지역검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아동사망 서류·정보·기록 제출 의무) 아동사망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에게 아동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정보 또는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24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역검토위원회의 지역검토위원장은 아동사망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사망 관계 전문가,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 제출한 자료나 진술한 의견에 대하여 민사상 또 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검토 또는 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위원회 위원 등의 면책) 위원회의 위원과 지역검토위원회의 지역검토위원은 위원회나 지역검토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보고서의 공개) 위원회는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사망한 개별 아동 및 그 가족, 후견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
 - 2. 아동학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

3. 사망한 개별 아동이나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5장 벌칙

-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아동사망 사실에 대한 통보나 관련 서류·정보 또는 기록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에 따르 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국가아동사망검 토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